

[해외여행분쟁] 사고발생으로 신혼여행 불가 상황 -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대금

반환 여부 및 범위: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4나7159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가. 신혼부부 원고는 여행사 피고와 사이 푸켓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, 숙박 예약 등

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여행계약 체결 + 계약대금 3,460,000원 모두

지급

나. 신부가 좌측 다발성 골절 등 5주 상해 사고 발생 + 신혼여행계약 해제 통지

다. 여행사에서 계약대금 3,460,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,724,600원 환급

라. 여행계약 약관 중 관련조항:

(1) 제5조: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 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.

(2) 제15조: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'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'와 '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'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2. 법원 판결요지

갑이 신부 을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을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병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, 병 회사가 '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'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,

약관 조항(제5조)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**무효**이고, 갑이 여행 출발 직전 계

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'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**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**'는 내용의 약관 조항 (제15조)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병 회사(여행사)는 갑(신랑)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조사자문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화해계약, 합의, 공탁 등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